★ ⊙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

문서번호	보건위생과-4235
결재일자	2015.3.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식품위생팀장	보건위생과장	보건소장	
김정열	정창훈	정주섭	03/17 김경희	
협조				

2015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

성 동 구

(보건위생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 업 구 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	● 구 민 : 유 ☐ ( ) 무 ☐ ● 전 문 가 : 유 ☐ ( ) 무 ☐ ● 이 해 당 사 자 : 유 ☑ (식품제조업 및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무 ☐
기 타 고 려 사 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 앙 부 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서울시 식품안전과) 무 ☐ ● 기 업 : 유 ☐ ( ) 무 ☑ ● 민 간 단 체 : 유 ☐ ( ) 무 ☑
언 론 홍 보 계 획	기획보도 ☐ 보 도 자 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영세 식품위생 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융자사업 시행

● 중점 홍보사항

-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추진근거

Ⅱ 기금운용 개요

Ⅲ 융자 실적

1 융자 현황

2 융자 현황 분석

Ⅳ 2015년도 기금 관리 운용 계획

1 기본방향

2 융자대상 및 조건 등

3 융자 업소 관리

4 융자 활성화 방안

5 세부 추진일정

Ⅴ 행정 사항

〈붙 임〉

1. 융자지원 업소 현황
2.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1부.
3.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4.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모범음식점) 1부.
5. 사업이행확약서 1부.
6. 사업완료신고서 1부.

2015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

식품진흥기금의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하여 영세 식품위생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과제 - 539(2009.12.23)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 계획(식품안전과-6699, 2015.3.12)

Ⅱ 기금운용 개요

- 설치년도: 2001년도
- 설치목적: 식품위생의 수준향상과 구민의 건강 증진
- 재　　원: 식품위생법(8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위반 과징금
- 용　　도: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사업, 식중독 예방사업, 식품접객업소 감시지도, 음식문화개선사업, 나트륨저감화 사업 등
- 기금 현황

❑ 2015년도 기금 규모: 671,421 천원(2015.2.28. 기준)

❑ 기금조성현황

(단위: 천원)

총액	금융기관 예치금				융자금 대출
	소계	정기예금	공금예금	통합관리기금	
671,421	544,651	250,000	194,651	100,000	126,770

Ⅲ 기금 융자 현황

1 융자현황 (2001 ~ 2014)

업종별 융자실적

(단위:개소)

구분	모범업소 육성자금	위생시설 개선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계	9개소	31개소	4개소
2001		6개소	1개소
2002		6개소	1개소
2003		5개소	1개소
2006		1개소	
2007		2개소	
2008		4개소	
2009		2개소	
2010	2개소	2개소	
2011	3개소	1개소	1개소
2012	1개소	2개소	
2013	2개소	1개소	
2014	1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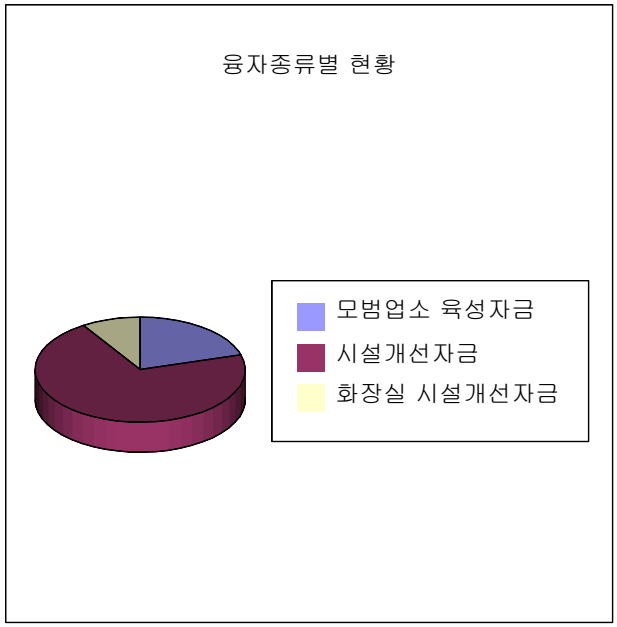

2 융자현황 분석

- 업종별 융자현황을 살펴보면 위생시설개선자금이 전체 융자실적의 70%를 차지하였으며, 2010년 이후 모범업소 육성자금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한편,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어지고 있음
- 2001년 이후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최고액을 기록한 이후 2004~05년의 경우 융자실적이 전무하였으며, 2010년 이후로 점차적으로 융자액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4년도의 경우 모범업소 육성자금으로 1개업소 5천만원의 융자로 예산액(1억 2천만원) 대비 42% 집행율을 보여 홍보 강화 등 융자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Ⅳ 2015년도 융자 계획

1 기본방향

- 다수의 업소 지원을 위한 3천만원 이하 소액 신청업소 우선 지원
- 시설개선 효과 제고를 위한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 우선 지원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우선 지원
- 한양대 음식문화 카페거리 참여업소 중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업소 지원

2 융자대상 및 조건 등

- **융자규모**: 213,000천 원(구 기금 120,000천 원 / 시 기금 93,000천 원)
- **융자대상**
  - ❑ 성동구에 소재한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자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 ❑ 융자대상 업소 현황(2015. 3. 13.기준)

(단위: 개소)

총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3,785	2,942	587	125	18	113

※ 융자제외 대상

-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 (단,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 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업소수와 무관)
- **퇴폐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6.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다, 거 위반)
- **융자기금의 부당 사용으로 인하여 조기상환 후 3년 이내인 자**

융자 종류 및 조건

구분	융자대상	금리	한도액	상환기간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2%	5천만원	1년거치2년균등분할
시설개선 자금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2%	1억원	1년거치3년균등분할
	식품접객업소화장실	1%	2천만원	1년거치2년균등분할
	식품제조업소	2%	3억원	3년거치5년균등분할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	3천만원	3년거치5년균등분할

융자 용도

❑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시설개선자금**

- 적 합: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 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적합: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 위생관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육성자금**

- 적 합: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비
- 부적합: 인건비·임대료(보증금)·융자금 상환

융자처리 절차

구분	융자절차	처리기관
융자 신청	1. 융자상담 및 신청서 교부(구→영업자)	구
	2. 융자가능여부 상담·신청(영업자→은행) ※신용보증대상은 보증서 발급신청(영업자→신용보증재단)	영업자
	3. 융자가능여부 결정통지(은행→영업자) ※ 신용보증대상은 보증가능 여부 결정통지(신용보증재단→영업자)	대출 취급은행
	4. 융자신청(영업자→구)	영업자
융자대상자 선정 확정	5.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구) 및 융자대상자 확정	구
	6. 융자대상 선정 및 통보(영업자안내)(구 →영업자)	구
	7. 융자대상 선정통보(구→수탁은행)	구
대출 시행	8. 대출신청(영업자→취급은행) ※ 신용보증대상은 보증서 발급신청(영업자→재단)	영업자
	9. 담보능력심사 및 계약체결통보(취급은행→수탁은행) ※ 신용보증대상은 보증서 발급(재단→영업자): 약 10일소요	취급은행
	10. 융자금대하신청(수탁은행→구)	수탁은행
	11. 융자금대하(구→수탁은행)	구
	12. 자금대여(수탁은행→대출취급은행)	수탁은행
	13. 대출(대출취급은행→영업자)	취급은행

구비서류

-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 ❑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모범음식점](별지 제7호서식)
- ❑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정서(모범음식점)사본
- ❑ 세부견적서 및 시설개선 사진(위생관리 시설개선 자금에 한함)
- ❑ 사업완료신고서(위생관리 시설개선 자금에 한함)

※ 시 자금 신청의 경우 사업이행확약서 추가 제출

3 융자 업소 관리

- 융자 신청시 조기상환 대상에 대한 철저한 안내
-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대출 후 3개월 이내 현장 확인을 통하여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한 편, **공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완료 보고서 제출**
- 조기상환 발생 및 조치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 및 관리(월별, 분기별)
- 융자기금의 부당 사용으로 인하여 조기상환한 경우 3년간 융자대상 제외
- 융자된 업소에 대해서는 새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련 업무 담당자가 융자 업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 조기상환대상자

- 시설개선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업소 등)으로 변경된 경우
- 모범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우수업소에서 지정 취소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성동구 관할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4 융자 활성화 방안

- 한국외식업중앙회 성동지회 및 관련 협회를 통해 홍보 협조 요청
-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시 기금 융자제도 안내
- 성동구 홈페이지, 구청 게시판, 성동구보 및 소식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한 편 정례반상회 홍보자료에 추가하여 직능단체를 통한 안내 요청
- 한양대 음식문화 카페거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업소 선정시 기금융자 제도를 설명하는 한편, 해당사업 참여업소에 대하여 융자를 우선 지원하여 사업 참여를 유도함

5 세부추진 일정

- 융자지원 계획 수립: ~ 3. 18.
- 공고 및 안내문 발송, 보도자료 제출 등: ~ 3. 20.
- 융자신청 및 접수: 3. 23. ~
- 융자심의 및 대상자 통보: 수시 심의
- 융자대상자 관리

V 행정사항

- 융자계획 공고 및 구보, 구청 게시판 게재, 반상회 자료 제공
- 융자가능 여부 안내 및 은행에서 정한 대출 약정 등 사전 설명 철저
-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융자업소 관리·감독 철저

붙임 1. 융자지원 업소 현황
2.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4.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모범음식점](별지 제7호서식)
5. 사업이행 확약서
6. 사업완료신고서. 끝.